

[2010. 5. 5] [22151 , 2010. 5. 4,]
() 02 - 2023 - 8162

1 () 「 」

2 () 「 」 (" ") 2 16 " .
"

1. 「 」 2 1 . .
(, " ")

2. 「 」 34 4

3. 「 」 31

4. 「 」 58 1 1

5. 「 」 10

6. 「 」 16 1 1 3

3 (가) 4 2 가

. < 2010.3.15 >
(葬事施設)

가 「 」

1. 330 :

2. 990 :

4 () 5 1

(需給) (" ") . <

2010.3.15 >

1.

2.

- 3.
- 4.
- 5.
- 6.

5 2 .
 (" . ") . . (.
) .< 2010.3.15>
 5 2 .
 (" ") 5 ,

- 1.
- 2.
- 3.
- 4.
- 5.
- 6. 11 28
- 7.

. . . 2
 . 가 .
 .
 5 5 .
 .< 2010.3.15>
 가
 .< 2010.3.15>
 7 가
 . 가 .< 2010.3.15>
 8 가 36
 .< 2010.3.15>
< 2010.3.15>

5 () 6 " "

1. 「 」 2 1 (가)

2. 「 」 16 3 1 (抽出)

6 () 7 2 " "

1. 2. (島嶼地域) 5 1

7 () 9 2 .

1. 가. , 1

2. 가. 30

(, , .)

3. 1 2 ,

8 () 10 3

1. 30 (骨粉) ,

2. , , (遺品) 10 3

1. 「 」 2 11

2. 가가 가 , , 가 30

9 () 12 1 10
 1

10 () , 13 4
 1.
 2. ,
 3.
 4.
 5.

11 () 13 5 . .
 1 .

12 () 14 2 " "
 1.
 2.
 3.

13 (가 가) 14 3 " "
 1. 가 , . ("가 ")
 2. (石築) (가 .)
 3. 가 .

14 (가 가) 14 5 " " 80

15 () 14 6 , ,
 2 .

16 () 15 1 " "
 1. .

2.

17 () 15 3 16 4 2 " "
. < [2009.9.21, 2010.3.15](#)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18 () 15 4 ,
3 .
.
.< [2010.3.15](#) >

19 (.가) 16 2 " "

- 1. .가
- 2. .가 (標識)
- 3. 가 .

20 (. 가 가) 16 3 .
가 . , 「 」 36 1

< [2010.3.15, 2010.5.4](#) >

- 1. .
가. . (宗約) .
.
.
.
가 . ()
가 .
- 2.
가.
1)

2)

3)

4) , , 가

5) 가

6) ,

.

1) ,

2)

3)

4) , , 가

5) 가

6) ,

7) , , , ,

8) , (. 가)

16 3 . 가

.<

[2010.3.15>](#)

1 2 . 가 .

가

, 가 가 .

. 가

16 3 . 가

.

1. .

2. .

3. .

21 () 16 6 ()

, , 4 .

16 6 , , 5 .

.< [2010.3.15>](#)

22 () 17 1 " "

17 2 " ,가

" 「 」
가 • 10 20

1.

2.

3

3.

가 (家業)

17 3 " " 5

17 4 " "

.< [2008.9.22, 2010.3.9](#)>

1. 「 」 36 1 1 가 •

2.

가. 「 」 4 , 「 」 4 , 「 」 4 , 「 」 4

「 」 22 • [「 」 15 3 10 • • () 21 10]

3. 「 」 49 「 」 8 •

4. 「 」 10 •

5. 「 」 28

6. 「 」 7 「 」 19 , 47

48 ,

7. 「 」 16 1 1 (要存國有林). ,

8. 「 」 6 •

9. 「 」 4 (砂防地)

10. 「 」 4 「
」 5 ,

11. 가

23 (, 1) 18 4 ,
1

1. 1 (2 , 3)

2. 1

3. 1 1 (2). ,
1 ,

24 () 20 5 28 4
10

, . . . 1

25 () 21 " "

1. 70

2. 「 」 3 4

3. 6 ()

4. (合葬) ()

5.

26 () 25 1 " "

1. () . , ,

2. 가 500

3.

27 () 34 가 , .

. . (" . ") . < [2010.3.15](#) >

1 가 . (" ")

1 1 15 .

가 , (互選) ,
 (「 」 2
) .< [2010.3.15](#)>

28 ()

1. (" ")
2. .
- 3.

29 () 2 . ,

30 () , .

31 () , .

32 () 1 . 가 .<
 1 . 가 .<
[2010.3.15](#)>

33 () , .

34 () , .

35 (가) (" ")
) . 가 (" 가 ")
) 가 가
 가 .< [2010.3.15](#)>
 1 가 ,
 가 .< [2010.3.15](#)>
 1 가 가 가 .<
[2010.3.15](#)>

36 (.)
 (" . ")
 가
 . 1 . ,
 .
 1

37 () . 35 36
 가
 . < 2010.3.15 >
 . 1 가
 ,
 15 . . < 2010.3.15 >

38 () 35 2
 6 .

39 () 35 1

 1 20
 , 가
 7
 2
 2

40 () 38 2
 . , , ,
 .

41 (.) 42 1
 1 10

. . .
, 7 .

.< 2010.3.15>

< 20791 ,2008. 5.26>

1 ()

2 ()

3 () 2002 4 20
17586

4 ()

56 1 3 6 “ ” “ ”
1 26 가

가.

()

38 2 2 “ ” “ ”

28 2

2.

38 1 26 “ 2 8 ” “ 2 9 ” , “ ” “ ”

3 1 2

: , , ,

11 2 3 “ ” “ ”

2 1 6 “ ” “ ”

43 5 “ 14 1 ” “ 15 1 ” , “ . ” “ .
.”

가가

29 7 “ 13 14 ” “ 14 15 ” , “ ” “ .
” , 7 2 “ ” “ .
” .

9 2 1 2 “ ” “ ” .

14 6 “ . . ” “ . . ” .

15 1 2 “ 20 ” “ 26 ” .

- 35 1 2 3 .
- 2.
- 3.

23 2 2 .
2.

14 6 “ 14 1 ” “ 15 1 ” , “ . ” “ .
.”

<16>

5 27 “ 2 8 ” “ 2 9 ” , “ ” “ ” .

<17>

- 15 1 2 3 .
- 2.
- 3.

<18>

34 5 10 “ ” “ ” .

< 21025 ,2008. 9.22> ()

1 ()

2 3

4 () <17>

<18>

22 4 10 " ㄱ 4 " " ㄱ
" 4 " .

<19> <26>

< 21744 ,2009. 9.21> ()

1 () 2009 10 1

2 3

4 () <37>

<38>

17 5

5. ㄱ ㄴ

<39> <54>

5

< 22073 ,2010. 3. 9>

1 () 2010 3 10

2 ()

22 4 6

6. ㄱ ㄴ 7 ㄱ ㄴ 19 , 47
48 ,

3

< 22075 ,2010. 3.15>

1 () 2010 3 19 . < >

2 () <132>

<133>

3 1 , 4 1 . 2 . 6 . 7 . 8 . 9 10 , 17

6 , 27 3 , 32 2 , 35 1 2 , 37 1 2 " 가 "

"

"

18 2 , 20 1 . 2 , 21 3 , 35 3 41 4 "

가 " " " .

27 1 " 가 " " " .

27 3 " 가 " " " .

<134>

<187>

< 22151 ,2010. 5. 4>

1 () 2010 5 5 .

2 3

4 () <137>

<138>

20 1 " ㄱ 」 21 1 " " ㄱ 」 36 1 "

.

<139>

<192>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화장시설

-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綠化)하여야 한다.
-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나)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가족자연장지

- 가.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나. 개인·가족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문중자연장지

- 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시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는 수목 1그룹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표지는 수목 1그룹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나. 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수목 1그룹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 전년도에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 급	연 간 매 출 액	1일 과징금
1	4천만원 이하	3만 5천원
2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만원
3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만 5천원
4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5만원
5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5만 5천원
6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만원
7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6만 5천원
8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만원
9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7만 5천원
10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만원
11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만 5천원
12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만원
13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만 5천원
14	10억원 초과	10만원

※ 비교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법 제42조제1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6호	300만원
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에 대한 화장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법 제42조제1항제7호	300만원
8.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법 제42조제1항제8호	200만원
9.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9호	300만원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	법 제42조제1항제10호	300만원

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1호	200만원
12.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2호	200만원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3호	100만원

※ 비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